



선 람	기 관 의 장

금정구 구보 호외 제 362-2 2020. 12. 3.(목)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고 시

- 하천점용 허가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177호) ----- 2
- 하천점용 허가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178호) ----- 3

공 고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0 - 1311호) ----- 4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0 - 1315호) ----- 15

회람								
-----------	--	--	--	--	--	--	--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 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3.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하천의 명칭

- 온천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239번길 39(회동동)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온천5호교 보수공사
- 개 요 : 보수공사 시설물 설치 및 작업공간 확보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온천5호교 일원
- 면 적 : 4,800m²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4. ~ 2020. 12. 30. (27일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178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3.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하천의 명칭

- 대천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성동(행정복지센터)
-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성로 452(금성동)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산성교 야간 경관조명 설치
- 개 요 : 가로 2m×세로1.5m 경관조명 2개소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금정구 금성동 1038(구) 산성교 위
- 면 적 : 1m²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3. ~ 2024. 12. 31.

금정구 공고 제2020 - 1311호

- 구서동 85-29 숙박시설 증축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02.

금정구청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대상사업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구서동 85-29 숙박시설 증축공사

나. 발 주 자 : 박경숙

다. 시 공 자 : 한라종합건설(주)

라.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금정구 구서동 85-29번지

○ 대지면적 : 441.7㎡

○ 규 모 : 지하1~지상12층, 1동, 연면적 2,847.55㎡

○ 증 축 : 지하1~지상12층, 연면적 1,684.61㎡, 관광숙박시설(호텔)

○ 용 도 : 일반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호텔)

○ 공사기간 : 2020. 12. ~ 2021 . 06.

○ 건축허가일 : 2020. 7. 6.

○ 공 사 비 : 1,650,000,000원 (부가세포함)

○ 안전점검 비용 : 금4,599,000원 (부가세포함)

바. 주요공정계획서 및 공정표 [별첨] 참조

3.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1) 건축 구조물 정기안전점검 3회
- 2) 향타·향발기 정기안전점검 2회
- 3)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정기안전점검 2회
- 4) 가설구조물(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정기안전점검 2회
- 5) 가설구조물(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정기안전점검 2회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금정구 공고 제2020-54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나. 결정방법

-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50점	평점=평가점수 X 50/100
제안가격	50점	평점=평가점수 X 50/100
합 계	100점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3)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4)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입니다.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0. 12. 09.(수) 14:00 ~ 16: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금정구 건축과 건축허가팀 장부훈주무관)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가격제안 최저가 : 4,599,000원 X 87.745% = 4,035,000원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4) 서약서 [서식4]

6. 예정가격 결정 일시

가. 일 시 : 2020. 12. 09.(수) 16:10

나. 장 소 : 금정구청 건축과 소회의실

다. 참석대상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라. 추첨업체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 접수번호 빠른순 4개 업체

※ 접수한 업체가 4개 미만인 경우 4개 미만의 업체로 진행함

7. 결과통보

가. 일 시 : 2020. 12. 11.(금) 개별통보 (예정)

나. 기 타 : 우선순위 1개 업체 사실확인서류(증빙서류) 제출 ('20. 12. 15.(화)까지)

8. 사실확인서류(우선순위 상위 1개 업체에 한함)

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1부

나.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1부

다.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각1부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마.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9.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0. 12. 11.(금) 09:00 ~ 18:00까지

나. 방 법

-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라.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 2) 담합이나 타인의 신청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신청

마. 수행기관 지정 이후 착공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 건축과 건축허가팀 장부훈주무관(☎051-519-45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직무분야	건축분야 [] 종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정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접수증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수수료 없음
----------------------	---	---------------

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2020-금정구-안전1-		
대 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E-mail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0 . . .

신청인 : (인)
(대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지정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2020-금정구-안전1-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평가	비고
1. 보유기술인	40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고급기술자: 2점 × 인원		
		· 중급기술자: 1점 × 인원		
		· 초급기술자: 0.5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3건이상		20점
		- 1건~2건		15점
		- 0건		0점
3. 업무중첩도	30	· 부산광역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5점 × 현장수 (감점)		최저 0점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 A- 이상		10점
		· BBB- 이상		8점
		· B- 이상		6점
		· CCC+ 이하		4점
		· 미제출		0점
총 계	100	평가점수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 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 함
3. 업무중첩도의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16개 구군(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 한 또는 지정예정인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중 건축분야 실적에 한함(단, 안전점검 비용이 1천만원 미만은 제외)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 업 명	금정구 구서동 85-29 숙박시설 증축공사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포함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금정구청장 귀하

[서식4]

서 약 서

□사 업 명 : 구서동 85-29 숙박시설 증축공사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 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금정구청장 귀하

[별표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평가	비고
1. 보유기술인	40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고급기술자: 2점 × 인원		
		· 중급기술자: 1점 × 인원		
		· 초급기술자: 0.5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3건이상		20점
		- 1건~2건		15점
		- 0건		0점
3. 업무중첩도	30	· 부산광역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5점 × 현장수 (감점)		최저 0점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 A- 이상		10점
		· BBB- 이상		8점
		· B- 이상		6점
		· CCC+ 이하		4점
		· 미제출		0점
총 계	100	평가점수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에 한 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 함
3. 업무중첩도의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건설본부, 16개 구군(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 또는 지정예정인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중 건축분야 실적에 한함 (단, 안전점검 비용이 1천만원 미만은 제외)

<가격 평가>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평가	비고
제안가격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97점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94점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91점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88점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85점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82점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79점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 76점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 73점		
		· 예정가격 11~28번째 근접 : 70점		
총 계	100	평가점수		

-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C기관 100점, A기관 97점, B기관 97점, D기관 94점
- 예정가격이란 가격제안 최저가(4,035,000원)의 +4% 편차 범위 내에서 우리구가 작성한 서로 다른 10개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 중 4개 업체가 1개씩 추천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한다.(원단위 이하 절사)
 ※ 접수일(2020.12.09.) 오후 4시 우리구 건축과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천할 4개 업체 선정 및 예정가격 추천 및 예정가격 결정함(접수한 업체가 4개 미만인 경우 4개 미만의 업체로 진행함)
-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준	심사방법
사업수행능력	50점	평점 = 평가점수X50/100
제안가격	50점	평점 = 평가점수X50/100
합 계	100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0-1315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내용 중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격증 가산점 부여 정비

- 하위등급 자격증 가산점 폐지 등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사항 반영
- 제26조제1항 및 별표 15 개정

나. 근무경력 가산점 관련 규정 신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위임된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을 규칙으로 정함.

※ 현행 근무경력 가산점(「인사고료가산점」, 「재난안전업무 가산점」)근거 규정 마련

- 제26조제2항 및 별표 16 개정

다. 실적 가산점 관련 규정 신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위임된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요건 및 산정방법을 규칙으로 정함.

- 제26조제3항 및 별표 17 신설

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 폐지

- 제14조 제1항 및 제3항(별표 7의2) 삭제

- 전산 직렬 ‘데이터’ 직류 신설에 따른 관련 직류 추가 및 ‘잠업곤충’ 직류 명칭을 ‘산업곤충’ 직류로 변경

- 별표2, 별표4,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7의4, 별표11 개정

마.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인사규칙 반영에 따른 차별폐지

- 지방방호직렬 신체검사 규정조항 삭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 제16조 제목변경, 제3항(별표4의2) 삭제

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후속조치

-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에 있어 임용예정직급 지정 기준 마련

- 제24조의2 신설

사.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방법, 절차(서식) 명확화

- 제23조제3항 개정, 별지 제9호 신설

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응시수수료 면제 규정의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변경

- 제6조제3항 개정

- 공무원 임용령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문구 삭제

- 제15조 개정

-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에서 정한 단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전직시험 방법 및 자격규정 조항 삭제

- 제19조 제5항 및 제6항 삭제

- 국가기술자격 법률 개정에 따른 자격증 정비
 - ▷ 방재기사 자격증 신설에 따른 방재기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직류에 방재기사 자격증 규정
 - ▷ 생물공학 기사 명칭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로 변경
 - ▷ 기계가공조립 산업기사 명칭을 기계조립 산업기사로 변경
 -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7의4 개정
- 방재안전직렬 경력경쟁임용 및 전직시험 면제, 가산대상 자격요건 등 개정
 - ▷ 방재안전직렬에 토목, 건축 등 실제 업무 유관분야 자격증 신설 등
 - 별표5의2, 별표7, 별표7의4 개정
- 방재안전연구직렬 경력경쟁임용 및 전직시험 면제, 가산대상 자격요건 등 개정
 - ▷ 방재안전연구직렬 전공분야 및 자격증 신설 등
 - 별표2, 별표6, 별표7의4 개정

자. 현 인사운영과 맞지 않는 조항 개정 및 삭제

- 제28조 및 제30조 삭제, 제29조 개정

차.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별지 서식 수정

- 제13조제1항 개정
- 별지 제2호(면접시험평정표) 삭제, 별지 제7호 개정(시험요구서 ⇨ 공개 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별지 제8호 신설(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 시험 평정표)
-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개정

카. 기타 미비사항 보완 개선

- 기타 인사규칙 표준안 반영 및 오류사항(이전개정 미반영분) 수정
 -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개정
 -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3, 별표 7의4, 별표 9,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519-4106, FAX : 519-4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금정구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금정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공지/입찰/고시 > 입법예고)

- 붙임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없으면”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촉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제27조제2항에”을 “제27조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충원계획”을 “충원계획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 시험에”를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를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로, “공동이용으로”를 “공동이용을 통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을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의”를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중이거나”를 “중에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재로 한다.”를 “현

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기준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실시할 때에는”을 “실시함에 있어서”로,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7조제2항 본문에”를 “제27조제2항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범위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같은 조 제3항 중 “출장을 갈”을 “출장할”로, “경우에는”은 “경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를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험을 요구할 때”를 “시험 요구 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현재로”를 “현재를 기준으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그 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전직시험이 면제되는”을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으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의”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급”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5급”으로 한다.

-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 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24조제2항 중 “범위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는 별표 15와 같고, 해당 직렬·직류의 해당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해 가산점 0.5점을 부여한다.
-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6과 같고,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 ③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제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17과 같고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실적 가산점의 반영비율 및 반영기간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을 따른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 중 “계속”을 “성실하게”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3, 별표 7의4, 별표 9,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3, 별표 15, 별표 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 및 별표 7의2를 삭제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 별표 15부터 별표 17까지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5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비고: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5조제4항, 제5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직류	연구관·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자	
	금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류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	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연구	안전관리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재난관리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5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류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비 고 :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자는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함>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관련)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데이터			
사 서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 1급부터 2급까지 기관사 1급부터 2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 1급부터 4급까지 기관사 1급부터 4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 1급부터 6급까지 기관사 1급부터 6급까지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부터 2급까지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부터 4급까지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부터 6급까지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 1급부터 2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 1급부터 4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 1급부터 6급까지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 2. 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데 이 터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p>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금 속	<p>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일반화학	<p>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p>
농 업	일반농업	<p>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술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p>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대 기	<p>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폐 기 물	<p>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항 공	일반항공	<p>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p> <p>기 사 : 항공</p> <p>산업기사 : 항공</p>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p> <p>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일반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건 축	<p>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리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업	직류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기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제3항, 제6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류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속	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섬유	기사(섬유, 의류)	
		화학	기사(화학, 세라믹, 식품)	
		산업경영	기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리	기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농업환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작물보호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촌생활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토목 ,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토목 ,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류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렬	직류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렬	직류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입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수의사
		가	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	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	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	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촌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톨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 업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5급이상			6·7급			8·9급		
		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의	수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어로									
	해양교통시설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건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건	방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무	치과의사			
약무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방지) 위생사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제)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제)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제)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제)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교통, 지질및지반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북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북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4조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 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 안전관리자직업상 담사2급, 사회조사분 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 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 조사분석사2급, 임상 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4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농업기계		

공 업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기계운전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톨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p>산업기사자격 증가 산 비 율 : 철도교통안전 관리사</p>

공 업	조 선	<p>기술사 :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p>	
	일반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전 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p>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공 업	일반화공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p>	
농 업	일반농업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식물검역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p>	
	축 산	<p>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 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 방 사선취급감독 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가축인공수 정사
	생명유전	<p>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p>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 반), 방사선취 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p>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p> <p>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p> <p>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p> <p>기능사: 식품가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p> <p>농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p>
	방 역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p>
식품위생	식품위생	<p>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p>
의료기술	의료기술	<p>기술사: 방사선관리</p> <p>기사: 의공</p> <p>산업기사: 의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2급, 의지보조기사</p>
환 경	일반환경	<p>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p> <p>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p>

환 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3급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지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도시교통설계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p>	
방재안전	방재안전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p>	
방송통신	통신사	<p>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통신기술	<p>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전송기술	<p>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자통신기술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p>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	--	--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농촌지도	기계 농업기계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공업연구	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전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공업연구	금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학	기술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학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작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원 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농촌지도	원 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술사 : 섬유 ,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 섬유 ,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섬유 ,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농촌지도	농촌생활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농촌지도	축 산 축 산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조 경	<p>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p>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p>기술사 : 축산</p> <p>기사 : 축산</p> <p>산업기사 : 축산</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p>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 화공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 조경, 산림 , 식물보호 , 해양환경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시설연구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사 :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5조제4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시 설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축 지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종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5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5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1]

연구직 · 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9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공 업	일 반 기 계
	전 기		농 업 기 계
	전 자		기 계 운 전
	금 속		일 반 전 기
	섬 유		전 자
	화 공		금 속
	화 학		섬 유
	물 리		화 공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환 경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작 물 보 호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식 물 검 역
	농 업 경 영	농 업	농 업
		농 촌 지 도	일 반 농 업
	산 업 곤 충	농 촌 지 도	농 업 경 영
	원 예	농 업	잠 업
		농 촌 지 도	일 반 농 업
			농 업
		원 예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업연구	생 명 유 전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생 활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촌 사 회
	축 산		농 업
		농 공	농 촌 지 도
	공 업 기 계		농 업 기 계
	공 시 설		농 업 토 목
	농 촌 지 도		농 업 토 목
녹지연구	임 업 경	임 업	전 직 류
		농 촌 지 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수 의	수 의
해양수산연구	해 양 환 경	환 경	수 질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자 원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양 식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공 학	해 양 수 산	어 로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가 공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경 제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보건연구	의 학	의 무	일 반 의 무
			치 무
	약 학	약 무	약 무
공 중 보 건	보 건	보 건	보 건
			식 품 위 생
환경연구	환 경	환 경	전 직 류
시설연구	토 목	시 설	일 반 토 목
	건 축		농 업 토 목
방재안전연구	안 전 관 리	방 재 안 전	방 재 안 전
	재 난 관 리		

2. 지도직공무원

지 직 렬	도 직 류	기 직 렬	술 직 류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업 연 구	작 물
			작 물 보 호
			농 업 환 경 영
			원 예
	농 업 경 영	농 업 연 구	농 업 경 영
	임 업	녹 지	전 직 류
		녹 지 연 구	임 업 경
	잠 업	농 업 연 구	산 업 곤 총
	원 예	농 업 연 구	원 예
	축 산	농 업	축 산
		농 업 연 구	축 산
	가 축 위 생	수 의	수 의
		수 의 연 구	수 의
	농 촌 사 회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농 업 기 계	공 업	농 업 기 계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업 토 목	시 설	농 업 토 목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촌 생 활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어 촌 지 도	어 촌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로
		해 양 수 산 연 구	전 직 류

[별표 13]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제24조제2항 관련)

구분		상당 계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임기제 공무원	일반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지방소방정	소방령 지방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육 공무원	대학교원 (전문대학 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		4-2호봉						

[별표 15]

가산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6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5급~9급)

직렬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직렬	직류						
행정	일반행정	재경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재경							
	기업행정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산	전산	데이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공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툴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직렬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직류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학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	기술사(화공안전)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이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의	수의	수의사				

직렬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직렬	직류					
해양수산	일반해양	일반수산 어 로 해양교통 시설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선박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건	보건	방역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방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 2급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무		치과의사				
약무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직렬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직렬	직류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상하수도)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콘크리트)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직렬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직렬	직류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직렬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직렬	직류			
토목운영	토목운영			<p>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p>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건축운영			<p>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건축사</p>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배관운영				
통신운영	통신운영			<p>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p> <p>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p>	산업기사 (전자,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기운영	전기운영			<p>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p> <p>기능장(전기)</p> <p>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운영	기계운영			<p>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p> <p>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p>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영사운영				

직렬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직렬	직류			
화공운영	화공운영			<p>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위험물, 가스)</p> <p>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농림운영	영림운영			<p>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조경, 식품)</p> <p>기사(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산림, 농화학,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조경, 식품)</p>
보건운영	보건운영			<p>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p> <p>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p> <p>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p> <p>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p>

2.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류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화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근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 ※1999.3.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영양사, 위생사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렬	직류		
	농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세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	임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경			
수의연구	수의	기술사(축산) 수의사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	의학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학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간호사, 조산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위생사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3.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렬	직류		
농촌지도	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입산가공, 농화학)	
	잠업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 ※1999.3.27이전 취득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2급, 위생사, 영양사		
어촌지도	어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별표 16]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제26조제2항 관련)

1. 교류직위에 근무한 경력

부여 요건	가산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 부산시역 외 근무지 인사교류자 : 교류 임용일 부터 1개월마다 0.05점 부여, 최대 1.20점 - 부산시역 내 근무지 인사교류자 : 교류 임용일 부터 1개월마다 0.02점 부여, 최대 0.48점

2.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부여 요건	가산점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 이상 근무한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실·국·본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전문분야 보직(도시안전) 실적가점과 중복부여 불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5점 부여, 최대 0.75점

* 재난안전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소하천정비법」,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풍수해보험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별표 17]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제26조제3항 관련)

가점항목	부여기준	배점	산정방법
① 업무추진 실적우수	1. 현안과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여 상당한 성과가 있는 직원 ▷ 매년초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거쳐 심의선정된 과제 ▷ 구 현안과제(목표관리) ▷ 실·국 현안과제(자체평가)	0.3점 0.2점	· 1년 단위로 주요업무자체평가 위원회에서 목표달성 여부 평가결과에 따라 S등급 가점 부여 · 사무분장 및 평가결과 기준으로 담당직원에게 가점부여 ※ 전년도 실적은 다음 해 4월 30일 기준 평정시 실적가점 반영(연1회)
	2.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단위 및 시단위의 평가 등을 통해 기관 포상을 받은 부서의 직원 ▷ 중앙단위 ① 최우수상 ② 우수상 ③ 장려상 ▷ 시 단위 ① 최우수상 ② 우수상 ③ 장려상	0.4점 0.3점 0.2점 0.3점 0.2점 0.1점	· 수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팀장 및 담당자에만 인정 · 수상부서에서 6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인정 · 포상구분이 없을 경우 포상 훈격으로 부여 (대통령 : 0.3, 국무총리 : 0.2, 장관 : 0.1, 시장 : 0.1)
	3. 저서출판 또는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① 저서출판 ② 논문게재	0.2점 0.1점	· 담당직무와 관련된 저서 및 논문만 인정(학위논문 제외) · 저서 및 논문은 각각 1회만 인정
	4.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각급기관 및 공익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경진대회, 발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직원	1회당 0.2점	· 교육 중 발표 제외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실적 가점으로 인정된 경우
	5. 기피(격무) 팀(직무) 내 근무자	0.48점	· 6개월이상 기피(격무)팀(직무) 근무자 월 0.08점씩 누적가산
② 업무관련 창안	정부제안규정 및 시·구제안규칙에 의하여 담당업무관련 제안 채택된 직원 ① 금상 ② 은상 ③ 동상 ④ 장려상 ⑤ 노력상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 주제안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부제안자는 배점의 1/2을 인정 · 제안에 따른 개인포상 및 승진자에 대해서는 가점 제외
③ 세수(歲收) 증대 및 예산절감	1. 경영수익사업 시행, 업무개선 등으로 세수(歲收)증대 및 예산절감에 직접 기여한 직원 ① 10억원 이상 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점 (1억원당 0.1점)	· 세수증대 및 예산절감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함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개선 사항으로 변경하여 심사 ·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그 실적이 인정된 경우(단, 격려금 대상자는 제외)

가점항목	부여기준	배점	산정방법
	2. 예산절감 및 지방세 징수에 기여하여 포상금을 받은 직원	포상금 수령액 100만원당 0.05점	· 지방세 징수와 관련한 포상금의 가점은 세무7급 이하만 적용
	3. 감사원, 중앙부처 및 자체감사 결과 예산절약 금액이 인정된 직원 ① 10억원 이상 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점 (1억원당 0.1점)	· 예산절감에 직접 기여한 직원에 한하여 인정
④ 업무유공 개인포상 수상	1. 훈장 2. 포장 3. 대통령 표창 4. 총리표창 5. 장관, 시장표창 6. 구청장 표창	1.0점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받은 포상만 인정 · 평정단위 기간 내 포상이 여러개일 경우에는 가점이 제일 높은 것 1개만 인정
⑤ 새로운 업무발굴 및 업무 개선 등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업무의 발굴 시행 또는 업무개선 등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객관적인 성과를 거양한 직원	0.5점 이하	· 사업성과 등에 대한 검토 후 타 항목의 가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게 가점부여 · 세수증대 및 예산절감 부문 등에서 대상항목이 변경된 사항도 동일하게 심사
⑥ 다자녀 출산우대	다자녀 출산 직원 ① 3자녀 ② 4자녀이상	0.2점 0.3점	· 평정단위 기간 내 출생신고가 된 경우 가점부여
⑦ 체납액 징수	1.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직원 - 10건 이상 체납자중 100만원 이상 체납액의 징수(5천만원 이상) 2.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직원(5천만원 이상)	0.2점 0.2점	· 체납액 징수에 직접 기여한 직원에 한하여 인정
⑧ 국시비 확보 우수	국시비 확보 우수 직원 및 팀장	0.2점	· 국·시비 확보 우수부서(직원) 평가(기획감사실) 결과에 따라 선정 ※ 전년도 실적은 다음 해 4월 30일 기준 평정시 실적가점 반영(연1회)
⑨ 적극행정 우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자	0.5점 이하	· 선발 후 다음 평정 시 반영하며, 선발 심의 위원회에서 인센티브 결정에 따라 부여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소	(우)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화		휴대전화		
				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		응시표 () 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④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인)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입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 급		직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군	①		①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 부문 · 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금정구청장 귀하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7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생년월일	성명	(한글)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사회적가치 이해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답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생 년 월 일	성명	(한글)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사회적가치 이해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 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붉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현행	개정안
<p>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② <u>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u></p> <p>1. · 2. (생략)</p> <p>3. 응시원서 접수기간 <u>중이거나</u>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u>보호대상</u>자인 사람에게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u>의하여</u>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u>현재로</u>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u></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중에 또는</u> -----</p> <p>-----</p> <p>③ -----</p> <p>-----</p> <p>----- <u>지원대상</u>자-----</p> <p>-----.</p> <p>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p> <p>----- <u>따라</u> -----</p> <p>-----.</p> <p>② -----</p> <p>----- <u>현재</u>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p> <p>-----</p> <p>-----</p> <p>-----</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u>경우에는</u>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사람도 포함한다.</p> <p>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u>별지 제2호서식에</u> 따라 검정한다.</p> <p>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u>다만, 경력경쟁 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u></p> <p>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출장할 ----- ----- ----- . -- <u>경우</u> ----- ----- .</p> <p>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 -----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 서식에 ----- ----- .</p> <p>② ----- ----- ----- . <단서 삭제> ----- ----- ----- . <후단 삭제> -----</p> <p>③ ----- ----- ----- ----- -----</p>

현행	개정안
<p>에 따른 각종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u><단서 신설> <후단 신설></u></p>	<p>----- <u>시험 요구 시</u>----- ----- -----<u>. 다만, 경력경쟁임용 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u></p>
<p>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 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p>	<p>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삭제></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③ <u>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u></p> <p>④ <u>제1항 및 제2항에</u>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p> <p>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 ③ (생략)</p> <p>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u>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u>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u>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p> <p>2. · 3. (생략)</p> <p>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u>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u> 응시할 수</p>	<p>②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④ <u>제2항에</u> ----- ----- -----.</p> <p>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p> <p>1. ----- ----- ----- <u>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u> ----- ----- -----.</p> <p>2. · 3. (현행과 같음)</p> <p>⑤ ----- <u>경력</u> ----- <u>경쟁임용시험등에</u> ----- -----</p>

현행	개정안
<p>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3호,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 ----- ----- 해당 기관 ----- ----- -----.</p>
<p>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생략)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p>	<p>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 ----- -----.</p>
<p>③·④ (생략)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10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p>
<p>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u></p>	
<p>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생략)</p> <p>② <u>제1항에 따라</u>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p>	<p>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의</u> ----- ----- ----- -----.</p>
<p>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① <u>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u></p> <p><u>1.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100분의 50, 제2차 시험성</u></p>	<p>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① <u>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u></p>

현행	개정안
<p>적 100분의 20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100분의 30</p> <p>2.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 :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100분의 70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100분의 30</p>	<p>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공무원 일반승진시험의 횡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횡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횡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5급</u> ----- ----- ----- ----- -----</p>
<p>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생략)</p> <p>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p>	<p>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p>

현행	개정안
<p>제26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에 따른 자격증 가산점은 담당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부여하며,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직렬의 해당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점 2.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언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가산점은 별표 16과 같다. <p><신 설></p>	<p>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p>제26조(가산점 평정)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는 별표 15와 같고, 해당 직렬·직류의 해당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해 가산점 0.5점을 부여한다.</p> <p>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6과 같고,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은 「지방공무</p>

현행	개정안
<p data-bbox="172 367 336 405"><신 설></p> <p data-bbox="134 835 743 875">제28조(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p> <p data-bbox="172 902 743 1413">용권자는 구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p> <p data-bbox="172 1440 743 2013">② 구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 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p> <p data-bbox="134 2040 743 2080">제29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p>	<p data-bbox="810 232 1382 338">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p> <p data-bbox="810 365 1382 808">③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제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17과 같고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실적 가산점의 반영비율 및 반영기간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제3항을 따른다.</p> <p data-bbox="772 835 935 875"><삭 제></p> <p data-bbox="772 2040 1382 2080">제29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p>

현행	개정안
<p>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p> <p><u>제30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한다.</u></p> <p><u>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u></p>	<p>전보) ----- ----- ---- <u>성실하게</u> ----- ----- -----.</p> <p><u><삭 제></u></p>